

I. 개요

기업의 구조조정이라 함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하여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합리화에 기울이고 있는 모든 자구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는 기업의 합병, 분할과 같이 기업의 조직을 변경하거나 주력업종 위주로 사업을 개편하는 사업조정,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 등이 있는바, 기업구조조정시 각종의 세제지원을 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한 바 이에 따라 지방세부분에 있어서도 감면 등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지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흡수할 계획이지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령상의 지원 내용은 주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현물출자에 따라 자회사설립에 따른 감면, 주주의 자산무상증여에 따른 감면, 사업교환에 따른 감면, 보증채무

인수에 따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 적시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재산에 대한 감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취득에 대한 감면, 구조조정관련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제도 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II. 기업구조조정지원관련 감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7호에 따라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되지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대도시내(유치지역과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와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에 해당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취득의 취득세 감면과 현물출자의 등기의 등록면허세 전액감면

현물출자의 등기의 범위에 현물출자재산에 관한 부동산등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나 관련규정에서 「현물출자의 등기」라고 표현된 이상 출자에 따르는 법인등기와 저당권 등 소유권취득이외의 부동산 등기에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물출자의 등기라 함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취득 관련 부동산등기이외의 모든 등기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소유권취득과 관련된 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취득세의 감면범위에는 부동산 취득(등기)을 포함하고 부동산취득의 감면에 대하여는 별도로 현물출자한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물출자는 수밖에 없다.

[사례] 현물출자재산에 관한 등기의 범위 판단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조항에서 현물출자의 등기의 범위에 대하여 현물출자재산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의 등기라 함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모든 등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현물출자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법인등기도 등록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행자부 세정-663, 2003.7.30.)

[사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등기의 범위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는바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에 의거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할 경우는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시 현물출자의 등기란 현물출자가액만을 자본금으로 법인등기(설립등기,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와 그 현물출자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함(행자부 세정 13407-569, 2002. 6.18.). -법인등기도 포함하여 감면

[사례] 현물출자등기의 경우 감면범위 판단

국○○공사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받은 국유재산을 한국○○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 국유재산의 현물출자가액만을 자본금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210, 2002.3.5.).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취득의 취득세 전액감면

(1) 감면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며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중에는 소유권 이외에 담보물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취득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것이 종전(2010. 12. 31이 전까지)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차이점이다.

왜냐하면 종전 규정에서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소유권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2) 적용요건

- ①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자일 것
- ②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으로 존속, 설립되는 법인에 양도할 것
- ③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 ④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것

(가)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종이 아닌 중소기업자일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 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현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사례] 레지던스에 대한 호텔등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 여부 판단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의 3차 개정(1989) 등에 따라 통계청장이 제2000-1호(2000.1.7)로 확정·고시하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9차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숙박업(551)에는 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휴양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포함되나, 장기간 숙박시설(아파트식 호텔 등)은 부동산 임대업(7011)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기초하고 있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는 월이나 연단위의 임대는 장기숙박으로, 1일이나 1주일단위의 임대는 단기숙박(ISIC Rev.4 code 5510)으로 분류되어 있고 2005년도에 합병한 법인의 2004년도 숙박현황 중 30일 이상 숙박관련 수입금액이 전체 숙박관련 수입금액의 80.28%를 차지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업(7011)에 따른 수입금액이 숙박업(551)에 따른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감면됨(행안부 지방세운영-2286, 2008. 11. 25)

-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하여 합병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는 바, 레지던스 부동산에 대하여는 숙박시설로 보아 감면 적용 함

[사례] 임차인이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제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법인전환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는 법문은 당해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소비성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임대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한 부동산에 단지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한다는 점만을 들어 부동산을 임대한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에 사업용재산 제공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단서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단서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행안부 도세-131, 2008. 3. 21)

- 거주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단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하여 부동산 전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행자부 세정과-2011, 2004.7.12 참조)

(나)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으로 존속, 설립되는 법인에 양도할 것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며 1981년 이후부터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무관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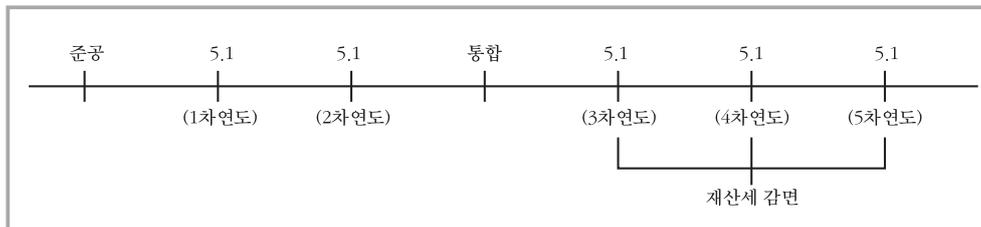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새로이 신설되거나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나 출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명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라)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것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 공매가격,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의 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취득하는 주식(지분)가액 ≥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자산-총당금, 부채)

이 경우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으로 재산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감면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잔여기간중에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잔여기간 동안은 감면을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하여 감면된다. 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의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 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한다.



또한 당해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된 가치에 의하는 것이다.

[사례]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감면요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호 및 제120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된 가치에 의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955, 2002.10.9.).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취득의 취득세 전액감면과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상법상의 조직변경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로부터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행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인격의 단순한 변경으로 보아 취득행위가 없는 무세가 되며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명칭변경에 해당하는 기타등기(예 : 매 1건당 3,000원)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설립등기인 법인등기는 상사법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출자금액의 4/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조직변경은 상법에 의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

사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그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법률상의 조직이 변경되어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바, 그 과정에서 조직변경 전의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조직변경 후의 회사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행위, 즉 취득행위가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면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비록 조직변경 전의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고 조직변경 후의 회사로 설립등기를 하여 새로운 법인격을 구비하는, 즉 취득행위가 없는 단순한 명의변경(예 : 상호명칭변경)과 유사한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에서도 조직변경으로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감소되는 것은 주식의 양도로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경우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를 구분하여 보면 법인등기는 등록세의 본질이 등기 형식에 따라 과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이 법인설립등기형식을 갖추는 한 법인설립으로 보아야 법인설립등기에 해당하는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변동이 아닌 단순한 명칭변경이므로 기타등기의 세율(매 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변경에 따른 상법상의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조직변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기타등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행위가 없고 단순한 명의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조직변경 이후에 불입·증자하는 법인등기나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법인설립일을 당초 조직변경 전 당초회사가 설립된 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조직변경에 따라 행하는 법인설립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인바, 조직변경 전 당초 회사의 설립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조직변경의 성격이 당초 법인의 인격을 승계한 점, 법인등기부상 「회사설립연월일」을 당초회사의 설립일로 기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조직변경 후의 회사설립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조직변경은 실질적으로 법인격을 승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는 상법 제606조에 의거 주식회사가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유한회사로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설립등기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99조). 이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18조 및 제197조의 규정에 의거 조직변경 후의 설립등기시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연월일도 함께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조직변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증자등기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은 소유권등기형식을 갖추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세율(예 : 유상승계취득시 1,000분의 40)을 적용하나 법인등기의 경우 출자

에 따른 등록세 세율(예 : 영리법인의 경우 불입 · 증자금액의 1,000분의 4)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도시 내에서 조직변경 이후 5년 이내에 출자하는 법인등기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과세 여부를 검토하면 당초 조직변경 전의 회사가 당초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변경 이후의 회사가 행하는 법인등기와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모두 중과세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조직변경 전의 회사가 당초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그 조직변경 이후에 행하는 법인등기와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 여부가 관점이 된다. 이 경우 당초 조직변경 전의 회사가 설립한 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법인설립 후 5년 이후에 행하는 법인등기 및 부동산취득은 중과세를 할 수 없고 조직변경당시의 회사가 설립한 날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행하는 법인등기 및 부동산취득은 중과세대상에 해당문제가 발생되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조직변경은 당초 법인의 인격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비록 설립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직변경 전의 회사설립일로 하여야 한다.

[사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등록면허세 중과 요령

소득세법 제88조에서도 조직변경으로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감소되는 것은 주식의 양도로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행위가 없는 사항으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으며, 법인등기는 등록세의 본질이 등기 형식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새로이 법인설립등기형식을 갖추는 한 법인설립에 해당되어 법인설립등기에 해당하는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고 부동산등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변동이 아닌 단순한 명칭변경이므로 기타등기의 세율(매 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이 경우 당초 조직변경 전의 회사가 설립한 날을 기준으로 보아 법인설립 후 5년 이후에 행하는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는 중과세를 할 수 없음. 즉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조직변경은 당초 법인의 인격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비록 설립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직변경 전의 회사설립일로 하여야 함(행자부 세정 13430-205, 2002. 3. 5.).



[사례] 조직변경의 경우 증과세대상 판단

1. 1979.12.24.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설립된 후 1993.12.31. 한주석유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는 소외회사 본점에 원고회사의 지점인 한주석유지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고, 1994.6.30. 소외 강원가스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역시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는 같은 소외회사 본점에 원고회사의 지점인 강원가스지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5년 이내인 1996.10.2.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합병과는 무관하게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1996.11.23.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한주석유지사와 강원가스지사는 원고회사가 대도시 내에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피합병법인의 본점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증과세대상에 해당함(대법원 99두9995, 2001.1.16.).

2. 상법 제6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 전에 법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조직변경 후의 법인명의로 변경등기하는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으나, 조직변경 전 법인소유의 영업용승합자동차를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로 명의변경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세율(매 1건당 7,500원)이 적용됨(행자부 세정 13407-335, 1999.12.21.).

3.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07조 제5항 및 제606조의 규정에 의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의 법인설립등기시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1)의 규정에 의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등록세율이 적용됨(행자부 세정 13407-82, 1999.1.22.).

4. 상법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의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매 1건당 23,000원)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38조 규정에 의한 증과대상에서 제외됨(내무부 13407-1276, 1997.10.13.).

5. 1989.1.21. 유한회사(갑)로 설립된 법인이 1992.2.10. 주식회사(갑)로 조직변경한 경우 이 대의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유한회사(갑)가 설립된 날(1989.1.21.)이 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274, 1996.3.13.).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취득의 취득세 전액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10호(동조 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조 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여기서 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외의 저당권 등도 포함되나 현 지방세법상에서는 저당권 등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는 취득세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외의 저당권 등에 대한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등록면허세의 면제규정이 없는 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다.

[사례] 분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면 적용범위

지방세법 분법으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취득을 수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로 이관 통합되었으나,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보전을 위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별도의 면제규정이 없다. 또한,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계약체결 등은 근저당이전에 대한 등기절차의 하나일 뿐으로 저당권 등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고 할 것이고, 부실채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위 부칙 등록세 경과조치를 준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라고 할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에 대한 근저당이전등기의 경우로서 2010년도에 인수계약 체결 및 인수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2011년도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종전과 달리 현 「지방세법」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서 달리 면제 등으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행안부 지방세운영465, 2011. 1. 27)

[사례] 한국자산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범위 판단

금융기관의 정리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을 인수하였고 신축중이던 건물(공정률 76% 진행)을 인수하여 잔여공사를 마치고 보존등기를 한다면 건축진행중으로 인수받은 건물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12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됨(행자부 세정 13407-1256, 2000.11.1.).

[사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접사용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자산의 경우는 그 자산을 귀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히 면제받은 등록세와 취득세는 추정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 13430-367, 2000.3.9.).

5.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취득의 취득세 전액감면.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정한다.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내국법인("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4.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다음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1) 현물출자의 사업용 재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시에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 등은 제외되나, 법인세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범위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현물출자한 것이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재산의 범위에는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대법원 관례에서 결정한 바가 있다.(대법원 2006두12494, 2008. 10. 23참조)

[지침]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의 범위 확대

최근 법원(수원지법 2008.5.28. 선고 2007구합10533 판결) 및 감사원(감심2009-21호, 2009.3.12. 결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를 "유형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는 "취득·등록세 과세대상 모든 재산"으로 변경함(행안부 지방세운영4307, 2009. 10. 12)

[사례] 법인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에 회원권의 포함 여부 판단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 이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취득세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지 않고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개산의 취득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분할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분할의 경우 종래 같은 법인 내에 존재하던 특정 사업부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당위성이 적고,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분할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분할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취득세 면제대상 자산 및 과세이연 대상자산의 범위는 각기 다른 입법 취지와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인 이 사건 회원권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감사원 2009년 감심 제21호, 2009.

3.12)

- 현재 해석은 토지와 건축물에 한정하여 해석하였으나 재산의 범위를 법인세법령을 준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기존의 해석(행자부 세정-630, 2003. 7. 28)을 변경필요

[사례] 조특법상 재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를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본 우리부 견해(지방세정팀-1892, '07.5.23)는 변함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채고자산(미분양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행안부 도세-312, 2008. 4. 3)

|| 판례 || 현물출자 재산의 범위와 광업권 감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는 현물출자를 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재산 중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과 그 현물출자한 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이연 규정인 구 법 제38조에서 정한 자산의 범위에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재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재산의 취득이 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재산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3695 판결 참조).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인 소외 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광업권이 구 법제12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두12494, 2008. 10. 23)

[사례] 광업권의 사업용재산의 범위 판단(중전해석이 변경되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취득세면제대상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를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는 취득세면제대상에서 광업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감심 제 2002-143~148호, 2002.9.17.).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에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 제외)이라고 규정한 다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출자법인의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어야 하는바, 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하고 그 5년 기간내에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A내국법인이 5년 이상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고 일시 휴업을 한후 영업을 재개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감면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법인이 자회사인 B내국법인을 신설할 목적으로 현물출자형식으로 양도하더라도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여기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

종전 법인인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종료일 까지 영위하던 A사업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승계받은 출자법인은 A사업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영위하여야 하는 것이다.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간에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관계(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여기서 특수관계자와 범위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다음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출자법인은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80% 이상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례]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적용시 자본금충족시기 판단기준일

현물출자의 경우 법령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인의 설립시 최초 자본금으로 자본금 기준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양도시점(현물출자시점)을 기준으로 자본금 기준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대법원 1998.11.24. 선고 97누6216 판결 ; 국세심판원 심판결정 국심2002중1051, 2002.7.15. 참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시점에서 소멸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물출자한 경우라면 당해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임(행안부 세정-104, 2008. 1. 9)

6.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취득의 취득세 전액감면.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바, 이는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모두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구분 실의

단순분할이거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성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분할 또는 소멸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차량 등은 물론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도 포함되는 개념이나 취득세 감면대상은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하여만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등에 대한 취득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이상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회사를 상법 제530조의 2, 제530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회사로 분할하고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부동산을 분할되는 회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인바, 분할에 의하여 성립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장부상 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인가?

상법 제530조의 2 및 제5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신설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을 교부하는 것이다.

즉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할회사

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의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무상으로 분할되는 회사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취득하는 등기시에는 부동산을 출자하는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없고 그 소속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의 의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세의 적용세율은 1,000분의 35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형태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출자회사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의 유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의 의한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세의 적용세율은 1,000분의 40이 되는 것이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비교]

구 분	물적분할	인적분할
근거규정(상법)	제530조의 12	제530조의 2, 제530조의 4
과세표준	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액(시가표준액)
취득세 세율	1,000분의 40	1,000분의 35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적용이 달라지게되고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례] 인적분할의 경우 적용 과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물적분할에 의한 경우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법인장부상 가액이, 인적분할에 의한 경우는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이 됨(행자부 세정-1892, 2007. 5. 23)

(2) 법인분할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과세 문제

상법 제530조의 2 및 제5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신설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분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은 종전의 분할되는 법인의 인격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분할설립의 경우 종전에 없는 새로운 법인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과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되는 것이다.

분할합병되거나 신설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없었던 지점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종전에 있던 사업장을 그대로 인계된 것이 불과함에도 새로운 지점 등의 설치로 그 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것인가?

① 법인의 합병이란 2 이상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의 되어 청산절차를 그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법인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 형태가 있고 합병의 시기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마친 때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41조에서 법인이 합병을 하였을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합병

전 사실에 대하여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합병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상의 합병관련규정을 볼 때에 합병으로 인하여 종전의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형태로서 합병에 따라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가 없는 인격승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②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2누12742, 1993.5.25.)에서와 같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종전 법인으로부터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종전 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사무실을 분사무소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사무실을 소속만 존속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대법원 판례와 같은 영업양수도 방식이 아닌 법인의 합병방식으로 종전 소멸법인의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종전 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사무실을 소속만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가 없다는 견해이다.

[사례] 분할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 감면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 하였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만 있음. 「지방세법」 제23조에서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등

기의 경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판결)으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의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더라도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행안부 지방세운영-1045, 2011. 3. 8)

[사례] 법인분할과 감면요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 제외)의 경우로서 분할신설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행정자치부 세정과-1080, 2004.5.8.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125호, 2002.3.25. 참조)(행자부 세정-3214, 2007. 8. 13)

[사례] 합병시 사업영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기준일

「상법」 제233조에는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4조에는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의한 합병일은 그 효력발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법」 제234조에 따른 합병등기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합병·피합병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하여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개업일)이후에 공장을 신축하였다면 공장 신축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함(행안부 지방세운영-2287, 2008. 11. 25)

[사례] 법인분할과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감면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의미는 분할하는 사업부분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행자부 세정-547, 2004. 2. 11)

[사례]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 등 감면 적용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적분할 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갑법인)이 ①분리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레미콘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②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③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되고 ④분할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면서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등이 면제됨(행자부 세정-1080, 2004. 5. 8)

[사례] 법인분할에 따른 감면적용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행자부 세정-2624, 2004. 8. 19)

[사례] 법인분할에 따른 매각시 감면의 정당한 사유 판단

조법인이 유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후,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할전의 법인이 취득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

음(행자부 세정-4730, 2004. 12. 24)

[사례] 법인분할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설립된지 5년 이상 된 골프장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5년 이상된 법인이 골프장사업부분을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라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517, 2003. 10.15.).

[사례] 기업분할과 회원권의 취득세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분할로 인하여 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분할로 인하여 취득세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630, 2003.7.28.).

[사례] 분할법인의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분할법인의 범위를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 이상 계속

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의 자산을 양수받아 이를登記하는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85, 2003.6.16.).

[사례] 법인분할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범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법상 제11절(회사의 분할) 제53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합병의 경우도 분할의 일종으로 보는 것임(행자부 세정-131, 2003.6.10.).

[사례] 기업분할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재정부 법인 46012-146, 2001.8.28. 참조)하는 것이므로 분할계획서상에 기재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411, 2003.5.19.).

7.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취득의 취득세 전액감면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소비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서 토지와 건축물 자산("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 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다수법인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축물」을 말하며, 부당행위의 부인이 적용이 되는 특수관계자 외의 다른 법인이 2년 이상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국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교환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수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사례]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0조 제1항에 말하는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고정자산의 종류가 같은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1174, 2002.12.10.).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취득의 취득세 전액감면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

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 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바,

여기서 첫째,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그 기준고시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기준고시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의하여 시정에 필요한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명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의 양도와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한한다.

둘째, 계약이전결정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을 때에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인수금융기관)이 이를 승계하는바, 금융위원회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영업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이전결정이 아닌 신탁재산의 이전결정은 이미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2호와 제120조제1항제11호에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5항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이전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계약 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과 이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범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 결정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받은 재산인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

상입(행자부 세정-2229, 2005. 8. 19)

-이전계약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감면대상인지 아니면 이전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감면 대상인지여부로서 이전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임

[사례] 계약이전명령 이의 재산에 대한 감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경우라면 계약이전결정서상 이전대상재산에 한해 취득세감면대상임(행자부 세정 13407-74, 2003.1.27.).

[사례] 조특법상 정리금융기관의 감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나, 귀문의 경우 정리금융기관 등이 양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23, 1999.10.16.).

[사례] 신탁이전의 경우 감면대상 판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됨. 그러나 신탁관련

자산에 대하여 인수은행이 계약이전결정과는 다른 별도의 계약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았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497, 1998.11.23.).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인 경우라면 취득세·등록세면제대상이나, 신탁재산의 이전에 관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 13407-아829, 1998.11. 10.).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의 취득세 50%감면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감면

-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1) 자산유동화의 범위

“자산유동화”라 함은 「자산유동화」라 함은 통상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호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등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

- 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또한 자산유동화계획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2.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4. 유동화자산의 종류·총액 및 평가내용 등 당해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5. 유동화증권의 종류·총액·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6.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저당권이전 및 경매신청·가압류 가처분·가등기의 범위

여기서 「자산보유자」라 함은 자산유동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담보부채권)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이 법원경매에 제시되자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참여·경락받을 경우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부채권으로 변제하고 이전등기를 하

는 경우에 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것인가?

(제1설)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와 (제2설)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견해가 있는바, 이를 보면 등록면허세감면요건을 분석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12.12.31.까지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이전에 해당하는 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 ①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 ②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영·처분하는 경우

여기서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유동화자산의 범위에는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저당권, 전세권 등도 포함되며, 유동화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자산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로부터 양수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어 「상기의 ①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감면」 됨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①과 같은 부동산소유권이전형태]

(유동화자산 :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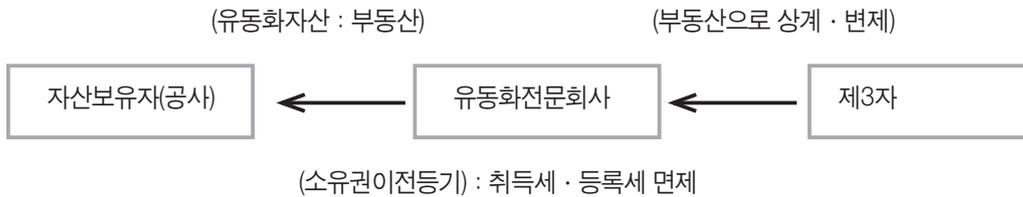


(소유권이전등기) : 취득세, 등록세 면제

그런데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양수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자산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받은 「유동화자산인 채권, 저당권 등 기타 재산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관리·운영·처분하기 위하여 그 유동화자산(채권)에 대해 제3자로부터 대물변제받거나, 채권 등 대신하여 경락으로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에는 「상기의 ②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형태에 해당되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경부의 유권해석(금감 41214-38, 1999.2.4.)도 같은 취지임.

[②와 같은 부동산소유권이전형태]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12.12.31.까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채권자자격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자산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로부터 양수받은 「유동화자산인 채권」을 관리·운영·처분하기 위하여 그 유동화자산(담보부채권 등)을 법원의 경매에 의거 유동화회사의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기의 ②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형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례] 자산유동화회사가 취득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산유동화회사가 고급오락장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유동화회사가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영, 처분을 위한 것이므로 취득한 자산중 지방세법상 증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2187, 2005. 8. 16)

[사례] 유동화자산에 대한 감면범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영·처분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합(행자부 세정-985, 2003.8.28.).

[사례] 유동화자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등록세감면 판단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및 가등기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전환사채를 양도받고 당해 전환사채의 보전이나 향후 강제집행 등을 위하여 당해 전환사채의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서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동화자산의 관리측면에서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로서 전환사채의 연대보증인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면제대상에 해당됨(행자부 세정 13430-234, 2003.3.28.).

[사례] 유동화자산에 대한 감면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인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부동산을 양수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감면임(행자부 세정 13407-1170, 2002. 12.10.).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12.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

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유동화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을 양수하고 동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에 기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동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함(행자부 세정 13407-188, 2002.2.26.).

[사례] 선박의 사업용재산의 범위 판단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취득세 등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박을 면제대상이 아님(감심 제2001-132 ~ 133호, 2001.11.13.).

[사례] 자산보유자로부터의 취득 여부 판단과 감면 여부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12.31.까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채권자자격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자산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로부터 양수받은 「유동화자산인 채권」을 관리·운영·처분하기 위하여 그 유동화자산(담보부채권 등)을 법원의 경매에 의거 유동화회사의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함(행자부 세정 13430-1219, 2000.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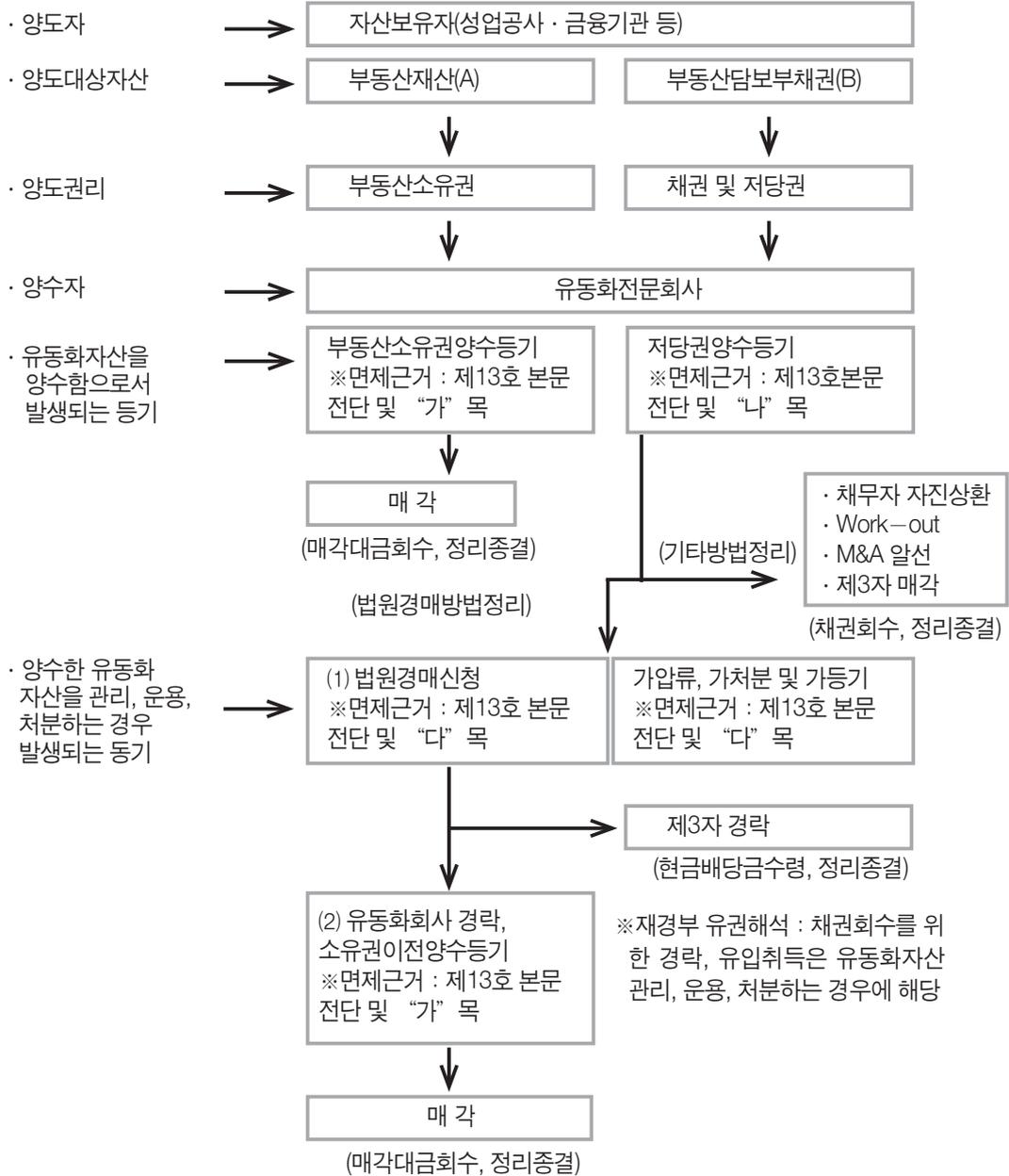
2.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담보부동

산에 관한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614, 2000.5.13.).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제120조 제1항 제12호 규정과 관련하여 제3자가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되지 않으나, 등록세의 경우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등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세가 감면됨(행자부 세정 13407-931, 1999.7.27.).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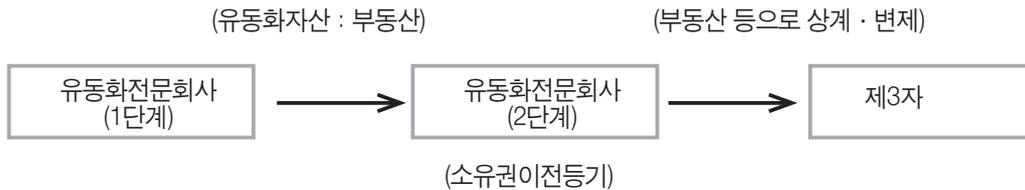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자산양도〉



또한 유동화전문회사(2단계)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1단계)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의거 유동화 자산(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가?

먼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여기서 자산보유자의 범위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의미할 수 있겠으나, 사전적인 의미도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자산보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법인으로 볼 경우 유동화전문회사(1단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2단계)가 유동화전문회사(1단계)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형태]



그런데 자산유동화사업을 할 수 있는 유동화전문회사 중 · 신탁회사(1단계)가 신탁회사(2단계)로 유동화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고, 신탁회사 이외의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1단계)가 유동화전문회사(2단계)로 이전하는 경우 실제상 자산보유자이면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자산보유자로 명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적용이 안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과세형평에 위배되며, 또한 유동화전문회사간의 유동화자산 이전을 통한 행위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자산유동화」 행위로 보고 있음에도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신탁회사 이외의 유동화전문회사간의 유동화자산이전은 「자산유동화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면 동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자산유동화회사간의 유동화자산의 이전에 대한 재정부의 해석 견해도 특수목적을 위한 수단인 도관(conduit)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례] 유동화자산에 대한 감면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후 유동화자산(채권)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다음, 법원 경매에 응찰하여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행자부 세정 13407-692, 2001.6.2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 경매에 응찰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606, 2001.6.5.).

[사례] 감면대상의 범위 판단

민법 제357조의 규정에 의하여·근저당권·이라 함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하는 것으로 저당권의 일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됨(행자부 세정 13407-678, 2001. 6.20.).

[사례] 유동화전문회사의 감면

1.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갑)가 자산보유자(을 : 내국법인)로부터 유동화자산(공사대금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할 목적으로 내국법인(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553, 2001.5.23.).

2.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로 부동산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376, 2001.4.6.).

3.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담보부동산에 관한 법원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614, 2000.5.13.).

[사례] 자산유동화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위탁자인 기업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으로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289, 2001.3.19.).

[사례] 자산유동화회사간의 이전시 감면 판단

현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적 지위는 자산보유자이기보다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단, 즉 도관(conduit)에 불과함. 다만,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조세문제는 자산의 이전(transfer) 등에 대해 조세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자산의 유동성(liquidity)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도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와 동등하게 등록세를 면제하여 추가비용이 없이 자산유동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재경부 중권 41290-95, 2001.3.26.).

[사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감면범위 판단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관련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아닌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14, 2001. 1.5.).

[사례]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등록세 감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인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물건을 유입하는 경우로서 자산유동화계획에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그 부동산을 양수하는 것이라면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1222, 1999.10.6.).

[사례] 자산유동화회사의 부동산이전등기시 감면 판단

제3자가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되지 않으나, 등록세의 경우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등은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세가 감면됨(행자부 세정 13407-931, 1999.7.27.).

[사례] 자산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도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되므로,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임(행자부 세정 13407-650, 1999.5.31.).

1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

-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